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86 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전용기·허 영·추미애

박용갑 · 정준호 · 윤종군

박홍근 • 박 정 • 김재원

전진숙 • 이용우 • 박지원

임호선 • 박민규 • 정을호

손명수 · 정동영 의원

(1791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헌법재판소법」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,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대통령과 같은 국가의 최고 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이며, 특히 내란죄, 외환 죄와 같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 된 경우 신속한 심판이 요구됩니다.

심판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, 이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또한, 탄핵심판의 목적은 해당 공직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정운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

있으므로, 중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내란죄, 외환죄 등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(안 제51조).

법률 제 호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내란죄,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정지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1조(심판절차의 정지) 피청구	제51조(심판절차의 정지)
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	
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	
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	
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.	
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 내란죄, 외환죄 등 국가의</u>
	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
	미치는 범죄에 대한 탄핵심판
	절차는 정지할 수 없다.